

변경 대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 1.5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A-E, C-P, C-PE, AG, CG, S 수익증권 신설
- 종류 C-E, C-I 판매보수 인하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14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~ 13. <신설></p>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8.종류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9.종류 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0.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1.종류 A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</u></p>

		<p><u>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2.종류 C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3.종류 S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
<p>제 10 조(수익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	<p>① (생략)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~ 13. <신설></p>	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~ 7.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8.종류 A-E 수익증권</u></p> <p><u>9.종류 C-P 수익증권</u></p> <p><u>10.종류 C-PE 수익증권</u></p> <p><u>11.종류 AG 수익증권</u></p> <p><u>12.종류 CG 수익증권</u></p> <p><u>13.종류 S 수익증권</u></p>
<p>제 39 조(투자 신탁보수)</p>	<p>③ (생략)</p> <p>[종류 A 수익증권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2.4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</p> <p>[종류 A-U 수익증권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3.4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</p>	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[종류 A 수익증권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2.4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</p> <p>[종류 A-U 수익증권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3.4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</p>

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</p> <p>[종류 C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10.0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E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7.4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F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3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I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5.4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W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0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	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</p> <p>[종류 C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10.0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E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<u>5.0</u>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F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3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I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<u>2.0</u>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W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0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
--	--

	<p>0.18</p> <p><신설></p>	<p>0.18</p> <p>[종류 A-E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1.2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P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5.5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-PE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2.75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AG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1.56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<p>[종류 CG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6.5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		<p>[종류 S 수익증권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6 2. 판매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1.0 3. 신탁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
<p>제 40 조(판매 수수료)</p>	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, A-U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 이내 <p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A, A-U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 이내 2. <u>종류 A-E,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</u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을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.)별로 다음</u></p>

		<p><u>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공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 S 후취판매수수료 :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이내</u></p> <p><u>⑥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5 항 1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 44 조(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~③ (생략) <신설></p>	<p>①~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</u></p> <p><u>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<u>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</u></p> <p><u>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-----	-------	-------

[요약정보]

투자비용
(생략)

<A-E 클래스 신설>

클래스 종류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			
	총 보수		판매 보수	동종유형 총보수
	판매 수수료	총 보수		
수수료미징구- 온라인(C-E)	없음	1.348	0.740	1.04

운용전문인력
(생략)

과세
<신설>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
<신설>

투자비용
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

클래스 종류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			
	판매 수수료	총 보수	판매 보수	동종유형 총보수
수수료선취- 온라인(A-E)	없음	1.108	0.500	1.04
수수료미징구- 온라인(C-E)	없음	1.348	0.740	1.04

운용전문인력
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과세
<신설>

-연금지축계좌의 세제(Class C-P, C-PE 수익자에 한함)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

판매 경로	온라인슈퍼 (S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기타	무권유 저비용(G)	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	개인연금 (P)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

				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--	--	--	--	----------------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													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h> </tr> <tr> <td>A-E</td> <td>수수료선취-온라인</td> </tr> <tr> <td>C-P</td> 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</td> </tr> <tr> <td>C-PE</td> 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</td> </tr> <tr> <td>AG</td> <td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</td> </tr> <tr> <td>CG</td> 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</td> </tr> <tr> <td>S</td> <td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</td> </tr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	A-E	수수료선취-온라인	C-P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	C-P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	AG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CG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S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
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															
A-E	수수료선취-온라인															
C-P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															
C-P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															
AG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														
CG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														
S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					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h> </tr> <tr> <td>A-E</td> <td>수수료선취-온라인</td> </tr> <tr> <td>C-P</td> 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</td> </tr> <tr> <td>C-PE</td> 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</td> </tr> <tr> <td>AG</td> <td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</td> </tr> <tr> <td>CG</td> 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</td> </tr> <tr> <td>S</td> <td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</td> </tr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	A-E	수수료선취-온라인	C-P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	C-P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	AG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CG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S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
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															
A-E	수수료선취-온라인															
C-P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															
C-P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															
AG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														
CG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														
S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					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년 05월 14일 - 종류 A-E, C-P, C-PE, AG, CG, S 수익증권 신설 - 종류 C-E, C-I 판매보수 인하				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생략)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				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<신설>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판매 경로</td> <td>온라인슈퍼 (S)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</td> </tr> </table>	판매 경로	온라인슈퍼 (S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											
판매 경로	온라인슈퍼 (S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														

			<p>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													
		<p>무권유 저비용(G)</p>	<p>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													
		<p>개인연금 (P)</p>	<p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													
<p>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</p>	<p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신설></p>	<p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25 800 1015 842">구분</th> <th data-bbox="1015 800 1442 842"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25 842 1015 953"> <p>종류 A-E</p> </td> <td data-bbox="1015 842 1442 953"> <p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25 953 1015 1104"> <p>종류 C-P</p> </td> <td data-bbox="1015 953 1442 1104"> <p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25 1104 1015 1325"> <p>종류 C-PE</p> </td> <td data-bbox="1015 1104 1442 1325"> <p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25 1325 1015 1545"> <p>종류 AG</p> </td> <td data-bbox="1015 1325 1442 1545"> <p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25 1545 1015 1803"> <p>종류 CG</p> </td> <td data-bbox="1015 1545 1442 1803"> <p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25 1803 1015 1877"> <p>종류 S</p> </td> <td data-bbox="1015 1803 1442 1877"> 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가입자격	<p>종류 A-E</p>	<p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p>	<p>종류 C-P</p>	<p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	<p>종류 C-PE</p>	<p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	<p>종류 AG</p>	<p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p>	<p>종류 CG</p>	<p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	<p>종류 S</p>	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</p>
구분	가입자격															
<p>종류 A-E</p>	<p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p>															
<p>종류 C-P</p>	<p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															
<p>종류 C-PE</p>	<p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															
<p>종류 AG</p>	<p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p>															
<p>종류 CG</p>	<p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															
<p>종류 S</p>	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</p>															

		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
--	--	---

**제 2 부
집합투자기
구에 관한 사항**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

종류형 명칭	집합투 자업자 보수	판매회 사보수	수탁회 사보수	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	총 보수
C-E 수수료 미징구- 온라인	0.560	0.740	0.030	0.018	1.348
C-I 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고액	0.560	0.540	0.030	0.018	1.148

<신설>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종류형 명칭	선취판매수 수수료	후취판매수 수수료	환매수수 료
A-E 수수료선취- 온라인	납입금액의 0.5% 이내	없음	없음
C-P 수수료미징구 -오프라인- 개인연금	없음		
C- PE 수수료미징구 -온라인- 개인연금	없음		
AG 수수료선취- 오프라인- 무권유저비용	납입금액의 0.5% 이내		
CG 수수료미징구 -오프라인- 무권유저비용	없음		
S 수수료후취- 온라인슈퍼	없음		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종류형 명칭	집합투 자업자 보수	판매회 사보수	수탁회 사보수	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	총 보수
C-E 수수료 미징구- 온라인	0.560	<u>0.500</u>	0.030	0.018	1.108
C-I 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고액	0.560	<u>0.200</u>	0.030	0.018	0.808

종류형 명칭	집합투 자업자 보수	판매회 사보수	수탁회 사보수	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	총 보수
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

		보수		보수		
A-E	수수료 선취- 온라인	0.560	0.120	0.030	0.018	0.728
C-P	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 개인연 금	0.560	0.550	0.030	0.018	1.158
C-PE	수수료 미징구- 온라인- 개인연 금	0.560	0.275	0.030	0.018	0.883
AG	수수료 선취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	0.560	0.156	0.030	0.018	0.764
CG	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	0.560	0.650	0.030	0.018	1.258
S	수수료 후취- 온라인 슈퍼	0.560	0.100	0.030	0.018	0.708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
예시표
(생략)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
예시표
(업데이트)

종류형 명칭	1년	2년	3년	5년	10년
A-E 수수료 선취- 온라인	124	202	284	460	984
C-P 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 개인연 금	119	243	374	656	1,493
C-PE 수수료 미징구- 온라인- 개인연	90	186	285	500	1,138
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</td> <td>금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AG</td> <td>수수료 선취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</td> <td>128</td> <td>210</td> <td>296</td> <td>480</td> <td>1,030</td> </tr> <tr> <td>CG</td> <td>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</td> <td>129</td> <td>264</td> <td>406</td> <td>712</td> <td>1,622</td> </tr> <tr> <td>S</td> <td>수수료 후취- 온라인 슈퍼</td> <td>73</td> <td>149</td> <td>229</td> <td>401</td> <td>913</td> </tr> </table>		금						AG	수수료 선취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	128	210	296	480	1,030	CG	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	129	264	406	712	1,622	S	수수료 후취- 온라인 슈퍼	73	149	229	401	913
	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G	수수료 선취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	128	210	296	480	1,030																								
CG	수수료 미징구- 오프라 인- 무권유 저비용	129	264	406	712	1,622																								
S	수수료 후취- 온라인 슈퍼	73	149	229	401	913														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<신설>	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<u>(6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</u> <u>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